

투자 위험등급 2등급(높은위험)	DBI공모주 코스닥벤처 SPAC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핵심 상품 설명서	유진투자증권 금융소비자보호 검토필 25-0000호
----------------------	--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집합투자증권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본 상품은 일반 예금 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대상 ()	위법계약 해지권	대상 (◎)	적정성판단 보고서	대상 ()
	비대상 (◎)		비대상 ()		비대상 (◎)
■ 유동성 위험 구분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본 상품은 개방형 펀드로 중도환매가 가능하나, 상품 특성상 일정기간 중도환매가 불가능하거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규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위험등급

* 당사와 운용회사는 시장위험 등급기준 또는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6 단계 투자위험 등급에 따라 펀드 위험등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융투자상품의 위험 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 위험등급 분류 매우높은위험(1등급) - 높은위험(2등급) - 다소높은위험(3등급) - 보통위험(4등급) - 낮은위험(5등급) - 매우낮은위험(6등급) *등급이 높을수록(1등급에 가까울수록) 일반적으로 상품의 위험도는 함께 증가합니다.			
✓ 당사가 정한 위험등급 의미와 유의사항			
위험등급	위험등급의 의미		유의사항
	투자자산 기준** (설정 3년 미만 펀드)	VaR* 기준 (설정 3년 이상 펀드)	

1등급 매우 높은위험	①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0%초과	위험선호도가 매우 높은 투자자를 위한 상품으로서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2등급 높은위험	①고위험자산에 8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0%이하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 수익실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3등급 다소 높은위험	①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0%이하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4등급 보통위험	①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0%이하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5등급 낮은위험	①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수익 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0%이하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6등급 매우 낮은위험	① 단기국공채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이하	

*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VaR값 00%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00%의 손실(신뢰구간 97.5%)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투자자산 기준은 약관에서 정하는 편입대상 자산의 상품군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고위험자산 :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중위험자산 :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저위험자산 :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

✓ 펀드를 가입할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는 무엇이 있나요

- ➔ 펀드의 운용구조를 살펴보면, 판매사,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가 관여하게 되며 이러한 기관별로 보수 및 수수료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판매수수료는 고객이 입금 시 차감되어 원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판매보수, 운용보수, 사무관리보수 등은 투자원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순자산총액 산출 시 차감되는 비용입니다.

✓ 펀드를 신규 매입·환매의 취소가 가능한 시간은?

- ➔ 펀드의 신규, 매입, 환매의 취소 가능한 시간은 개별펀드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펀드의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취소 가능한 시간이 지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가 불가능하며 '폐쇄형'으로 설정된 펀드의 경우 환매가 제한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펀드 환매 시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세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면, 편입된 주식 부분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해를 보았을 경우에도 과세대상 소득(채권이자, 채권매매차익, 주식 배당소득 등)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표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펀드의 결산 재투자자는 무엇인가요?

- ➔ 결산은 펀드의 운용성과를 계산하여 이익금과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로, 통상 설정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매년 실시하게 되며 펀드별로 결산일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익금에서 신탁보수, 제비용, 세금 등을 공제하고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이익분배금이라고 하며 이익분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수익증권을 다시 매입하는 것을 재투자라고 합니다. 이익금 중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자산 등의 매매이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환매시까지 유보하게 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결산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상품 관련 위험에 대해서는 상품설명서의 '투자에 따른 위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펀드	신탁	랩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전문가가 주식, 채권 등 여러 종류의 금융상품에 나누어 투자하고, 결과(이익 또는 손실)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	위탁자(고객)가 특정한 재산을 수탁자에게 옮겨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하고 이익은 수익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금융상품	고객이 맡긴 재산에 대해 자산구성 및 운용, 자문, 사후관리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투자일임 서비스

■ 민원처리,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영업점, 고객센터(1588-6300) 및 홈페이지(www.eugenefn.com) 에 문의 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6조 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DBI공모주 코스닥벤처 SPAC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1. 펀드기본정보

펀드명	DBI공모주 코스닥벤처 SPAC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위험도	2등급(높은 위험)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Class A: K555B4EN9422 Class C: K555B4EN9430 Class C-I: K555B4EN9828
고난도 펀드	해당사항 없음	레버리지(차입 등) 한도	200%
펀드 종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혼합자산형/종류형/사모형/ 개방형(1년6개월 제한(2027년 3월 29일까지))/단위형(단, 2025년 09월 29일까지 추가 납입가능)		
가입자격	적격투자자		
최소투자금액	- 전문투자자로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시행령 제27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1,000만원 3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별표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계약(신탁계약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탁계약기간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3년간(수익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연장 가능) - 최초설정일: 2025년 8월 12일, 신탁계약기간 만료일: 2028년 9월 30일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계약(신탁계약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일정	- 최초설정일(2025년 8월 12일)부터 이전 매입 청구분까지 매수 가능 17시 이전 자금 납입 시 제 2 영업일(T+1 일) 기준가격 적용 17시 경과 자금 납입 시 제 3 영업일(T+2 일) 기준가격 적용 ※ 단, 최초 설정일에는 최초 설정일(2025년 8월 12일)의 기준가격 적용		
환매일정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동안(2027년 3월 29일까지)은 환매가 불가능하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후(2027년 3월 30일)부터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시 30분 이전: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산정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15시 30분 경과후: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산정하여 제5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본 펀드는 1년 6개월간(2027년 3월 29일까지) 환매가 제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계약(신탁계약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제 혜택 적용 시 유의사항	본 펀드에 투자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후, 투자일(매수결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펀드를 환매(일부 환매 포함)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결산 및 이익분배	·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1년간으로 하며,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 이익분배: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제26조 및 제28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소득의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자산운용회사	DBI자산운용(주)	판매회사	유진투자증권(주)
수탁회사	삼성증권(주)	사무관리회사	한국펀드서비스(주)
원금손실발생여부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 및 이익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자산운용사 또는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이에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설명자료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명자료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신탁계약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설명자료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신탁계약서 또는 설명자료 본문의 투자위험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분쟁발생 시 당사 준법감시인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상품의 내용

가.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자산

투자전략	① 이 투자신탁은 국내 KOSPI 또는 KOSDAQ 상장기업이 발행한 CB, EB, BW, RCPS(이하 “메자닌 증권”), KOSPI 또는 KOSDAQ 상장주식, 공모주, 국내 발행 신용평가등급 A이상의 채권(단기 사채의 경우 A2- 이상)을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 투자신탁이 수행하는 전략은 메자닌 증권 발행물 인수 또는 유통물 매수 후, 주가 상승 시 주식으로 전환하여 매도 후 수익을 확보하고 주가 하락시 채권의 원리금을 회수하는 전략입니다. ③ 또한, 이벤트가 있는 주식(IPO, 유·무상증자, 분할·합병, Block Deal, 공개매수, M&A, 액면분할, SPAC)을 운용하여 수익을 취하고자 하는 이벤트 드리븐(Event-driven) 전략으로 운용하며, 헤지 목적인 경우 주식 대차매도, 파생상품(단, 선물에 한함) 등으로 보유자산에 대한 헤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④ 공모주 투자는 우량 공모주를 선별하여 투자하되 배정물량 확대를 위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 요건을 충족하여 우선 배정받는 적극적인 투자전략을 구사합니다. 단, 벤처기업투자신탁 요
------	--

	건은 메자닌 증권을 편입하여 충족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KOSPI 또는 KOSDAQ 상장된 주식을 편입하여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대상자산	① 이 투자신탁은 국내 KOSPI 또는 KOSDAQ 상장기업이 발행한 CB, EB, BW, RCPS(이하 “메자닌 증권”), KOSPI 또는 KOSDAQ 상장주식, 공모주, 국내 발행 신용평가등급 A이상의 채권(단기 사채의 경우 A2- 이상)을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 투자신탁은 상장예비심사청구가 예상되는 비상장 기업이 발행한 증권(보통주,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우선주(RCPS, CPS 등)(이하 “Pre IPO 등”이라 한다)에 투자 가능합니다. ③ 이 투자신탁이 수행하는 전략은 메자닌 증권 발행물 인수 또는 유통물 매수 후, 주가 상승 시 주식으로 전환하여 매도 후 수익을 확보하고 주가 하락시 채권의 원리금을 회수하는 전략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대상자산의 취득한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한도	이 투자신탁은 법령이 정한 한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대상자산의 취득한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면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	---

다.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투자전략 실행 이외의 여유자금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국·공채와 같은 우량채권과 예금, 금융기관의 예치, REPO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	--

라. 중층·복층 투자구조(타집합투자증권의 편입)

중층·복층투자구조	이 투자신탁은 타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지 않습니다.
------------------	-----------------------------

마.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 산정 방법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1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①-2 외화표시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전일의 최종시가 또는 2인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② 비상장 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일의 가격)

④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⑤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⑥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⑤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⑦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⑧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⑨ 파생결합증권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의 평균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파생결합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주1)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기준가격 산정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산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그 기준가격 산정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 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의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제2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투자위험

가. 위험등급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에 제한이 없는 혼합자산투자신탁이며, 다양한 운용전략을 가진 헤지 펀드로 최대 레버리지 한도는 200%입니다. 또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벤처기업 투자신탁 요건 충족을 위해 벤처 인증기업 또는 벤처 인증 해제 후 7년 이내의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연계채권을 편입하며 유동성 위험, 신용 위험 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6등급 중 **2등급(높은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나. 펀드 주요위험 – 투자자산 위험

구분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본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인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유동성위험	본 투자신탁은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본 투자신탁은 각 투자자산별 다양한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을 통해 운영되며 거래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투자된 자산의 원본 전부 또는 일부의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및 권리행사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움직이는 경우 제시하는 수익구조 및 권리 내용에 따라 수익이 '0(零)' 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 자산의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해지거나 투자대상 자산의 권리내용 변경 등으로 인하여 투자대상 자산이 발행 시의 투자대상 자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기타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매매활동이 어려워지는 등의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 등의 가격변동위험	투자대상 증권의 발행회사 영업환경, 재무상황, 신용상태 악화 및 시장에서의 증권 수급상황 등의 이유로 투자대상 증권의 가격하락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일반적으로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 가격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 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및 어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한 경우, 신탁계약 및 신고서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및 어음 등을 지체 없이 처분하는 등 이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관련 사채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관련사채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발행비 용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발행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하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위주로 발행됩니다. 또한, 주식관련사채는 일반 채권대비 발행물량이 적고 시장이 협소하여 시장매각 시 수요가 전혀 없거나 부족하여 매각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매각이 가능하더라도 적정 가격을 받지 못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장내 상장되어도 일반주식에 비해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이는 곧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코넥스 상장주식 위험	이 투자신탁은 코넥스 상장기업 중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발행한 신주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코넥스 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비교해서 변동성은 높은 반면 유동성은 낮을 수 있어 이에 따른 투자 위험이 클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발행주체가 현금흐름의 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투자한 채권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해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아울러 채권의 이자와 원금 등에 대한 회수완료가 기간이 연장됨에 따른 환매연기 등으로 기회비용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및 운용에 대한 위험	본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원칙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레버리지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 미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서 투자원금액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공모주는 과거 거래 전례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상장된 주식보다 더 큰 가격변동성이 수반될 수 있으며, 한정된 물량 하에 시장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모주 우선배정에 관한 위험	이 투자신탁은 코스닥벤처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 총자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하고 35%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후 7 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 중견기업 주식(구주포함)에 투자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상기 투자비율 미 충족시에는 공모주 청약시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 펀드 주요위험 - 투자전략 위험

구분	주요내용
레버리지 위험	이 투자신탁의 자금차입, 파생상품 등을 통한 레버리지를 200% 이하의 범위에서 운용하므로 수행하는 운용전략에 따라 마진콜 관리/부채비율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운용할 예정이나, 통제하기 어려운 시장위험이나 체계적인 위험의 발생, 운용전략의 실패 등으로 인하여 레버리지 투자한 부분에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경우 펀드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한 손실로 인하여 펀드가 청산될 수 있습니다.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고유위험	본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투자신탁으로 시장과 무관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시장변화 또는 거시 경제적인 시장 충격에는 헤지 전략 등의 운용전략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금융위기, 경제위기 또는 예상치 못한 시장충격에 적절히 헤지 하지 못하여 급격한 가치 변동 및 가격 급락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일반적인 시장 변동보다 더 높은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종 집중투자에 따른 위 험	본 투자신탁은 소수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업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업종의 성과에 따라 투자신탁의 성과가 좌우될 수 있으며, 해당 업종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서 투자목적과는 다르게 급격한 가격변동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투자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KOSPI 수익률과의 괴리 가능성	본 투자신탁은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 및 기타 차익거래 등을 주요 운용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서 일부

	투자기간에 대해서는 일부 업종 및 소수 종목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KOSPI의 업종 구성 및 종목 비중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운용과정에서 활용하는 운용전략에 따라 주식투자 비중이 조절됩니다. 따라서 시장 국면별로 KOSPI와의 수익률 괴리 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평가 위험	일반 사모투자신탁은 투자대상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상당기간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탁재산의 평가가 원활이 이뤄지지 않고 상당기간 장부가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가 확인한 투자성과가 상당부분 적절한 시장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성과보수 지급위험	이 투자신탁은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보다 더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성과보수는 운용수익률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운용성과가 클 수록 더 높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게 되어 수익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기대하는 성과보다 낮은 수준의 투자성과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오류 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사, 판매회사 등의 관련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산정되며,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가 1,000분의 1 미만의 오차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오류로 인해 투자신탁의 투자자가 수령하는 경제적 가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정위험	본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해 납입된 금액이 목표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설정이 연기 혹은 취소되거나 납입된 금액이 반환될 수 있습니다.

나. 펀드 주요위험 – 시장 위험

구분	주요내용
시장 위험 및 개별위험	본 투자신탁은 국내 상장 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변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고, 이 경우 투자원금의 전부 및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책변동위험	투자 대상의 가치는 정치·경제적 상황, 정부정책, 과세제도 등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투자 수익률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각 위험	투자대상자산을 중도에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대상자산의 가치가 취득 원가 대비 급락, 매수자의 부재, 거래량의 부족 등의 사유로 매각의 무산 또는 매각이 지연되거나 장기간 거래가 되지 않아 투자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지되지 않은 위험	본 상품설명서에 고지된 위험 사항은 작성 당시에 파악된 위험요소를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나, 본 상품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예측하지 못한 추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나. 펀드 주요위험 - 기타 위험

구분	주요내용
세금 위험	일반 사모투자신탁은 시장상황에 따라 다양한 투자대상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법상 과세 처리되는 자산에 투자하여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펀드의 과표 기준가에 반영되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과세소득 규모에 따라서는 소득발생의 다음 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은 거주자 개인 및 내국 일반법인이 본 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결산 혹은 만기해지에 따라 받는 이익분배금에 대한 과세대상수익에 대하여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다만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률 참조)
규모의 위험	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활용한 전략이 일정 규모 이하에서만 유효한 전략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기구 규모의 급증 또는 일정 성과 이상에 도달하여 펀드 규모가 목적인 규모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에 동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효하지 못한 전략 수행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투자신탁의 설정금액이 소액이거나, 환매 등에 의해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분산투자 등 원활한 펀드 운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규모위험	집합투자기구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로 작아지거나 일정 규모 이상으로 급증하는 경우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 등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운용성과 및 가치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매 관련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며, 환매청구 시 기준가격 적용일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투자결정 시 환매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매 연기 위험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집합투자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수익자의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기 환매시 위험	본 투자신탁은 중도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수익자의 환매요청 시 평가이익 내지 매매이익 등 이익금 발생 시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환매 이후 기준가격 하락 시 기존 수익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일반사모투자신탁으로 공모형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의 투명성을 가진 펀드입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동 투자신탁의 가격변동의 사유 또는 이상변동 등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지하지 못한 추가적인 손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Prime Broker 파산 위험	일반사모투자신탁은 주로 전담중개업자(Prime Broker)와 자산의 중개,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유동성 공급, 가격평가의 공정성 확인, 신용공여 및 레버리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전담중개업자의 신용위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담중개업자가 담보자산을 대여 또는 채담보 등으로 활용할 경우 전담중개업자의 파산 시에 대여 또는 담보자산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회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위에서 설명한 주요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 시점 현재 예상 가능한 위험을 설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된 이후에는 투자 환경의 변화, 관련 제도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위에서 설명한 위험 외에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고난도 펀드

이 투자신탁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난도 상품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단,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이 파생상품을 편입할 수 있으며 그 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상품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심사숙고하여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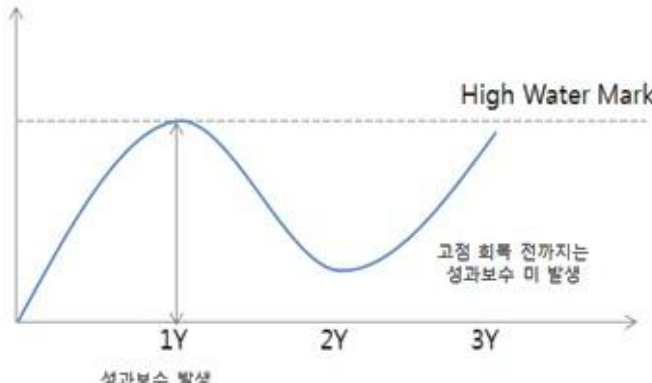
라. 유동성 리스크 및 관리방안

중도환매 가능여부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 (1년6개월 제한) (2027년 3월 29일까지)

이 투자신탁은 국내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사모 메자닌증권에 투자할 예정이므로 유동성의 제약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투자신탁은 전환 기간 및 조기상환일이 본 펀드의 만기일 이전에 도래하는 메자닌증권 위주로 투자하여 투자금 회수에 대한 법적 권리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투자신탁에서 수요예측 참여로 배정받은 IPO 종목은 상장 당일 또는 확약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매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기의 방안으로 이 투자신탁의 유동성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도록 운용할 계획입니다.

4. 펀드비용(수수료·보수)

수익증권 종류		Class A	Class C	Class C-I
내용				
보수 (연, %) 순자산총액 기준	운용	1.00%	1.00%	1.00%
	판매	0.30%	0.50%	0.10%
	신탁	0.20%	0.20%	0.20%
	사무관리	0.035%	0.035%	0.035%
	총보수	1.735%	1.735%	1.335%
선취수수료		납입금액의 1.2%	없음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성과보수		Hurdle 연 7.0%, 초과수익의 15.0% 성과보수를 적용 (High Water Mark 방식) (*해당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신탁계약서 제34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igh Water Mark 방식이란 동일한 성과에 대해 성과급을 두 번 지불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첫째 20%의 수익이 나고 성과보수를 지불했다면, 원금+수익금보다 높은 수익이 발생해야 추가적인 성과보수가 발생 합니다. 초기 High Water Mark는 매입 시점의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가격 산정 시 성과보수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보수 이외에 운용성과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하므로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투자신탁보다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성과보수는 성과보수 인출 시점에 계산하여 인출하므로 투자자는 기준가격으로 예상한 운용성과보다 미달하는 성과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보수 및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위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별 가입자격 상세내역은 집합투자규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운용 전문 인력	경력
정현종	트러스타자산운용 대체투자부문 대표 (공모주 코벤 하이일드 펀드 등, 사모펀드 4개 설립, AUM 301.3억원 운용)
대표 펀드운용역	메이슨캐피탈 대표이사 (신기술금융 펀드 5개 설립, AUM 1,053억원 운용) 한국증권금융 자산운용부문장 (유가증권/대체투자 6조 1,054억원 투자 총괄, PEF/VC 총 47개 펀드 5,965억원 투자) 홍콩 삼성자산운용(Asia) CEO&CIO (China Fund 등 3천억원 펀드 운용) 삼성생명 해외투자/전략투자 수석운용역, 신탁운용부장 (국내외 증권/대체투자 10조 6,500억원 운용, 신탁펀드 2,800억원 운용)
이상모	맥스앤마블투자일임 펀드운용역 (공모주 펀드 3개(일임 2개, 하이일드 1개)/액티브 펀드 운용, 총 AUM 55억원 운용)
펀드운용역	제피러스랩(AC) 투자심사역 (엑셀러레이터 투자심사역, 총 AUM 1700억 펀드) PSI International Inc.(미국법인)/Senior Associate Treasury Team 내 Project Finance Modeling 담당(\$150M USD 투자유치)

5. 환매에 관한 사항

환매에 관한 사항	①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동안(2027년 3월 29일까지)은 환매가 불가능하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후(2027년 3월 30일)부터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본 펀드는 1년 6개월간(2027년 3월 29일까지) 환매가 제한되며, ③ 본 펀드에 투자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후, 투자일(매수결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펀드를 환매(일부 환매 포함)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 제2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6. 해지에 관한 사항

환매에 관한 사항	①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	--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3.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 249 조의 9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해지 명령을 받은 경우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 제2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8.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49조의8의 규정에 의해 수익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익자 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	---

※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소비자의 권리

(1) 위법계약해지권

구분	내용
정의	금융소비자는 판매규제를 위반한 계약에 대해 일정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판매규제 위반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
대상 금융상품	계속적 형태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으로서, 계약기간 종료 전에 해지하면 소비자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지요구 기간	1) 소비자가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2) 계약서류 받은 날과 최초 수수료 등 납부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내
행사방법	서면 등(*)으로 의사표시 ※ 우편, 팩스나 전화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방법(전자우편 제외)
행사효과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10일 이내 금융소비자의 해지요구에 대한 수락여부 통지
법적효과	1) 금소법상 위법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2)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은 원칙적으로 해당상품을 매각한 금전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상품을 현상대로 반환할 수 있으며 시장의 특성상 추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투자자가 개별의사 표시에 따라 해당 상품 그대로 반환을 원한 경우 3)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나 수수료 등 부과 불가

(2) 자료열람 요구권

구분	내용
정의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 녹취 등)을 요구할 수 있음
행사방법	열람 목적,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 열람 방법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규정 양식)에 따라 기재하여 요청 1) 열람 목적 :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내역 2) 열람자료의 내용 : 상기 1)의 내용과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 간의 연관성 기재
행사효과	자료 열람을 요구받은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공 함 단,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 함. ※ 자료 열람의 제한 사유 1) 법령에 따른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타인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열람으로 인해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비밀이 현저히 침해되는 등의 부적절한 경우
기 타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를 청구할 수 있음

■ 투자자 체크리스트

사모투자신탁 체크리스트는 사모투자신탁을 가입함에 있어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투자자가 상담 임직원으로부터 본 계약에 대하여 설명을 충실히 들었음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되므로 신중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펀드의 투자위험도(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펀드의 명칭 및 종류가 무엇인지 설명 들었습니다.
- 펀드의 운용방법 및 수익구조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펀드의 투자 대상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펀드 투자 시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펀드 재산의 운용방법, 운용제한 및 운용전략에 대하여 설명 들었습니다.
- 환매(만기)의 제한 또는 연기의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 들었습니다.
- 투자자 또는 펀드가 부담하는 각종 보수,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하여 설명 들었습니다.
-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 정관의 주요 내용 변경에 따른 공시에 대하여 설명 들었습니다.
- 본인은 상기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위험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듣고 이해하였습니다.
- 본인은 위법계약해지권 및 자료열람 요구권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2025 년 08 월 일

계좌번호	
투자자 성명	(인 또는 서명)
대리인 성명	(인 또는 서명)
문의처	(지점명) 지점 (전화번호) 고객센터 1588-6300

■ 설명직원 확인 사항

- 설명의무 이행을 위하여 상품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하고 정확하게 고객에게 설명하고 고객이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지 점 명 : _____

설명 직원 : _____